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 현 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실화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향상시키고자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활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하여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안 제2조제14호 신설)

나.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2항)

다.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한 협의체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부터 제8항 신설)

라.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에서 위촉일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38조제2항)

마.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지하안전정보에 관

한 통계연보 제작·발간을 신설함(안 제42조제1항제5호 신설)

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제33조제2항 중 “지하개발사업자”를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로,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을 “변동된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하정보의 생산·갱신·제공에 관한 사항
2.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그 밖에 지하안전정보체계”로 한다.

5.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의 제작·발간

②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통보, 보고하는 경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 13. (생략) <u><신설></u>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 -----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u>송유관 안전관리법</u> 」 제2조제2호의 <u>송유관</u>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생략) ② <u>지하개발사업자</u>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u>법 제42조제2항에 따른</u>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42조제2항에 따라</u> 지하개발사업자 ----- ----- <u>변동된 지하매설물</u> <u>준공도면을 포함한</u>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

④ 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하정보의 생산·갱신·제공에 관한 사항
2.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의 고

	<u>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u> 2. <u>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관련 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u> ⑦ <u>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u> ⑧ <u>제3항부터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u> ⑨ ----- <u>제8항까지</u>-----
<신 설>	
<신 설>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생 략) ②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u>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4. (생 략) 5. <u>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u> ·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u>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u> 6. <u>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u> ③ (생 략)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사람</u> 6. ----- ----- <u>사람</u>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의 제작·발간</u> ② <u>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통보, 보고하는 경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u>
---	--

<u><신 설></u> ②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지하안전정보체계- ----- ----- ----- -----.
---	--